

의안번호	2202430
의 퇴 인	최수진의원
회 답 일	2024.09.23.
추계번호	24C2563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보건의료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)	○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<u>출연금·보조금·융자금</u>이나 <u>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함</u>(제3항) ※ 현행법은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음	의무규정
	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·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		○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·보조금의 지급·사용·관리, 융자의 대상·기준·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 (보건의료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(안 제5조)

-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·보조금·융자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,

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수행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·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

-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수행 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경우, 보조금 지급에 또는 융자의 이자 상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 필요 자원 규모와 장기 및 일시 차입 여부, 이자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2024년 예산 기준 1,164억 6,600만원을 출연하고 있음

[표 1]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내역 및 2024년 예산

구분	사업명	예산
1	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(R&D)	267억 9,300만원
2	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(R&D)	190억 9,700만원
3	감염병 예방·치료 기술개발사업(R&D)	504억 5,400만원
4	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(R&D)	30억 7,000만원
5	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(R&D)	170억 5,200만원

자료: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